

III. 농촌융복합산업[6차산업] 사업자 인증제 운영요령

1 사업자 인증기준

- ◇ 6차산업 경영체 중 자격요건(인증대상),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

① 자격요건(인증대상)

- (대상주체)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· 소상공인 · 사회적기업 ·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· 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
 - *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하는 주체
- (사업장 입지)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 - * 주된 사업장이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
- (사업영역)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 ·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 ·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

《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》

제3조(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)

1.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*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
2.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
3. 농촌지역의 유 ·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· 관광 · 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
4.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*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

**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국산을 사용하고,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 · 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
***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매입(농협 등)을 통해 주원료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(매매 계약서, 거래내역서 및 계산서 등)

- (사업성과) 최근 2년간(신청년도 미포함)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‘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’을 달성한 경우
 - 농산물의 수입대체,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, 신시장 개척,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
 - *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37백만원(‘15년 37,215천원, ‘16년 37,197천원)이상

② 사업계획서

- ('18년 신규인증/ 현행) 6차산업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, 혁신성 및 경쟁력, 발전가능성, 지역농업(사회)과 연계성,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 -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

< 사업계획서 '18년 신규 심사기준(안) >

평가항목	세 부 내 용	배점
1.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이 6차산업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• 농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, 2차, 3차 산업이 융·복합된 정도 	15
2. 혁신성 및 경쟁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· 독창성 	1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산제품·서비스의 차별성, 가격·품질 측면에서의 경쟁력, 농산물의 수입대체, 신시장 개척,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	20
3. 발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체가 6차산업을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정도(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) 	20
4. 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내의 생산, 가공, 유통, 관광 등 6차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·협력 정도 	15
5. 사업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, 일자리 창출실적 등 	20
계	-	100

2 인증절차 및 방법

① (인증절차) 인증신청(신규개신)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,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인력,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

<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 >

구분	인증신청 (신규개신)	인증심사 (전문가 3~7인)	인증추천 (70점 이상)	추천검토	인증자 확정 통보
인증 일정	수 시	(원칙)수시 (예외)분기1회 이상	수 시	수시	수 시
추진 기관	신청자→ 6차산업 지원센터	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	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→ 한국농어촌공사(농자원) (농자원)	한국농어촌 공사(농자원) →농식품부	농식품부

② (인증신청)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
-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
- 자격요건 적격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 추진여부,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· 평가

< 인증신청 제출서류 >

1. 인증신청서(별지 1호 서식)
2. 사업계획서(별지 2호 서식)
 -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: 추진사업의 명칭,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,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,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,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,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,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, 농산물의 수입대체,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, 신시장 개척,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등
3. 농업경영체 증명서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
4.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: 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
5.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③ (인증심사)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인증제 심사위원회(3~7명)*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
* 농경제, 제조·가공, 농산업, 마케팅, 체험·관광, 유통 등 분야에 최소 3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(외부위원은 총 심사위원의 1/2이상으로 구성)

○ (자격요건 심사) 6차산업 지원센터 자체 서면심사 가능

- ①대상주체 적합 여부, ②농촌지역 소재 여부, ③ 6차산업 참여 여부(1, 2, 3차 산업 중 2개 이상이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)
- 최근 2년간 6차산업 사업성과(매출액), 농산물의 수입대체,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, 신시장 개척,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여부
-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영체 여부

○ (사업계획서 심사)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, 사업계획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심사

-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심사항목별로 서류내용 검토 및 현장실사 병행 추진
- 매출액, 일자리, 지역농산물 사용* 관련 검증은 신청자가 심사단의 실사 전에 준비하고, 심사단은 서류 확인(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점수 부여)

* (매출액)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, (일자리)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,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, (지역농산물) 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 등

④ (인증대상자 확정 및 인증서 발급) 심사결과,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 및 인증서 발급

○ 6차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인증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, 시도는 검토 후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

-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관련서류 최종 검토 및 인증여부를 농식품부로 제출
- 농식품부에서 인증대상자 확정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발급

3 인증사업자 지원

- [1] 지원사업 혜택 :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
- [2] 지원사업 내역
 - (자금지원) 6차산업 융자 자금*(연 300억원)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지원
 - * 시설·장비구입(토지매입 포함) 및 리모델링자금 최대 30억원(2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), 운영자금 3억 원(2%, 2년 일시상환)
 - (컨설팅) 신제품 개발,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종합 가공센터*를 통해 시제품 생산, 보육교육 등을 지원
 - * 6차산업화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금융, 법률, 스토리텔링, 품질 및 위생 관리,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온·오프라인 지원
 - ** 농산물종합가공센터 : '15년 30개소 → '16년 44개소(누적) → '17년 69개소(누적)
 - (유통·판로) 소비자 판촉전, 유통전문가(MD 및 바이어 등) 초청 품평회, 유통채널 입점,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대 지원
 - (홍보) 6차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, 온라인사이트(www.6차산업.com)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
 - (인증사업자 표시)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이나 및 제품*에 '6차 산업 인증표시(로그)' 및 '6차산업 제품BI(beyondfarm)' 표시 가능
 - * 생산·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·용기·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 가능
 - (지원사업 선정) 향토산업육성사업,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

- (우수사업자 포상) 6차산업 경영실적이 높고,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

4 인증사업자 사후관리

① 인증 유효기간

-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
 - 6차산업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
 - 갱신대상자로 선정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

② 인증 갱신 및 취소

-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^{*}되거나,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
 - 단,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
*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: 1차 농산물 변경 시
 -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^{*}
* 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전화 또는 문서 등
 - 인증사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
* ①인증신청서, ②사업계획서(갱신),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(해당 자) 등
- 자격요건(인증대상) 및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
 - 인증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,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
당해 년도에는 신규인증 신청 불가

- 인증 개신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

-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, 1년간 사업 중단, 사업계획과 다른사업 수행,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
 - * 「농촌융복합산업법」 제14조(인증의 취소) 사유 참조

③ 인증사업자 포기

- 인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(자진 폐업 등)의 발생으로 인증 사업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기사유 등을 명시한 **인증포기서(붙임 4) 제출***

* 제출처 : 인증신청을 한 관할 시도(6차산업 지원센터)

** 처리방법 : 시도(지원센터)에서는 포기사유 검토 후 인증포기 현황 농식품부에 제출

④ 인증사업자 성과관리

-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성과 분석
 - 시도 및 각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성과관리를 조사하고, 필요시 이행실태점검 추진

※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 및 이행실태점검 2회이상 조사에 불응하거나,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증취소 등 적의 조치 (사업계획서 이행여부, 계약재배 및 매출액 검증 관련 증빙자료 증점 확인)